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1호, 2024. 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의2	지정취소		
-------------------------------------	---------------	------	--	--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 16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전담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신설></u>	<u>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
<u>③·④</u> (생략)	<u>⑤·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u>제5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연 락 처	(044) 204 - 7672